#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외 19명

나. 의안번호 : 제2624호

다. 발의일자 : 2021.08.11

라. 회부일자 : 2021.08.18

## 2. 제 안 사 유

- 현행 별표2의 급수업종은 2012년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용'을 '공공용' 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동 조례 제19조제2항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의 경우 당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용'으로 적용하여 수도요금 납부처리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상위법령(「수도법」)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요금을 '공공용'으로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나. 「수도법」시행령 제51조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의 4제1항제1호 및 제2호)
- 다.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 토 의 견

####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업종 구분을 '공공용' 으로 정정하고. 「수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사설소화용 급수설비 사용 요금에 대해 급수업종을 '공공용' 적용 (안 제19조제2항)
- 「수도법」제45조에 따르면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19조에는 사설소화용 급수설비 사용과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급수업종은 '업무용1)'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해당 급수업종인 '업무용'은 지난 2012년 급수여건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sup>2</sup>)하여 '공공용'으로 변경한 바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도 '공공용'으로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9조제3항에는 여전히 '업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안 제19조제2항과 같이 '업무용'을 '공공용'으로 정정하는 것은 현행 별표1의 '급수업종 구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sup>1) &#</sup>x27;68년 최초 '특수용'으로 규정

<sup>2)</sup> 급수용도에 맞는 명칭변경(2012. 1.5)

 <sup>-</sup> 가정용 → 가정용(변동없음), 대중목욕탕용 → 욕탕용
업무용 → 공공용, 영업용 → 일반용

2012년 이후 해당 조항이 바로 수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만큼 조례 관리에 소홀했다 할 것임.

또한, 지난 6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현행 급수업종인 '공공용'을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용'과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정례회(제303회)에서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업종 및 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구분 업종	사용구분(m³)	'21년 7월 부터	'22년	'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390	480	580
욕탕용	0~500	400	440	500
	500 초과	44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 초과	1,040		
일반용	0~300	980	1,150	1,270
	300 초과	1,040		

- 2) 「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 현행 조례 제40조의4는「수도법」제33조제3항 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0조의4제1항 및 제2호는 「수도법 시행령」개정3)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sup>3)</sup>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 삭제('16년 개정)